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2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8. 7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지방세법제176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시·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시장·군수가 1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파주시시세조례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을 3,000원으로 정하고 있음.

우리시는 1999년부터 세율을 3,000원으로 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들은 4,000원으로 과세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자주제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인상코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3,000원에서 4,000원으로 인상 조정함(안 제22조)

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가목중 “ 3,000원” 을 “ 4,000원” 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세 무 과
입 안 자	세 무 과 장	석 명 범 ☎ 940-4220
	시 세 담 당	이 용 석 ☎ 940-4238
	담 당 자	정 삼 섭 ☎ 940-4231

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제22조(세율) ①칸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	제22조(세율) - - - - -
1. 개인의 세율	1. - - - - -
가.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	가. - - - - -
읍·면·동 : <u>3,000원</u>	- - - - <u>4,000원</u>
나. <생략>	나. 현행과 같음